

취업을 미끼로 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한다

- 구인사이트 등과 협업하여 구직 채널 집중홍보, 신뢰성 높은 구인 플랫폼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6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다.
-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한다.
 - ② 사기가 의심되거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한국통합물류협회 협업)이다.
 - ③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여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운영할 계획(‘23.7~)이다.
 - ④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1855-3957)해달라” 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지동선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이민규 (044-201-4156)
			주무관	정상미 (044-201-4155)

참고 1

택배차 강매사기 사례 및 피해 현황

□ 택배차 강매사기 사례 및 피해 현황

- (사례)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의 보장 등을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 내 거짓광고로 피해자 유인
 - 일자리 알선보다는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목적이며,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차량구매 유도
 - 신차 2천만원, 중고차 1~1.3천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하여 2.5~3천만원에 강매
 - * 커넥션이 있는 중고차딜러 등을 통해 택배차를 제공받으며, 차량 강매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 고금리 캐피탈을 받도록 유도
 - 차량 강매 이후, 장기간 일자리 알선을 미루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자리를 소개해주더라도 수입이 낮고, 배송이 힘든 지역이 대부분
 - 강매사기였음을 깨닫고 환불 받으려 하나, 대부분 거부 또는 연락두절

< 택배차 강매사기 사례 >



- (피해현황) 거래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300여명이 가입

참고 2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세부 내용

① 사기 예방을 위한 구인플랫폼 관리 기능 강화

-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한다.

* (요약) 택배차 구매 유도 및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캐피탈용)하는 행위는 사기임을 의심

- 또한, 택배 취업 관련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택배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10여개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② 물류신고센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상담 실시

-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 예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를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택배 강매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물류 신고센터에 연락함으로써 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안내 예시 >

- 1) 구인광고를 등록한 업체가 택배사와 연관된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택배사 본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택배사-택배대리점간 위수탁계약을 요구하세요.
- 3) 택배사 또는 대리점은 취업을 명목으로 차량구매, 개인 신용정보 조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형법」, 「직업안정법」,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공정위,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물류신고센터 연락처 : 1855-3957

③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구축('23.7~)

- 실제 택배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한 신뢰성 높은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택배 대리점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 내 구축하고, 추후 동 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업계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리점 차원에서는 차팔이를 통한 구인 활동을 중지토록 하고, 차팔이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대리점은 재계약 평가 등에 반영토록 택배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④ 주요 구직 채널 중심의 집중홍보, 화물종사자격 취득 시 관련 교육 실시

- 구직 희망자들이 사기 수법, 유의사항 등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등을 활용해 택배대리점 홈페이지,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홍보하고, 택배업계 차원에서도 피해사례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한다.
- 또한, 화물운수자격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 과정에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교육을 포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종사자들의 피해 예방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유의사항 관련 문구 예시(커리어넷) >

취업을 미끼로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를 조심하세요!



! 택배사 취업 시 유의사항

1. 택배대리점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택배차량 구매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택배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
2. 구인광고를 등록한 업체가 택배사와 연관된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① 택배사 본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택배사-택배대리점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세요.
 - 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nlic.go.kr/nlic/logis112.action, 1855-3957)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사례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기업 택배업체 취업? 알고 보니 택배차 강매사기!

취준생 A씨는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기업 택배업체 취업이 가능하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위해 B업체를 찾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B업체에서는 자신을 통해 택배차량을 구매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며, 택배차량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고, 개조비, 소개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더해 결국 신차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 택배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다. 차량 구매 이후 택배업체 취업을 위해 연락을 해 보았지만, 몇 달간 잠시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뒤늦게 B업체가 일명 ‘차팔이’ 업체로 택배업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이며, 택배회사 취업을 미끼로 중고 택배차를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올린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A씨는 택배차량을 환불받으려 B업체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를 주의하세요!



택배차 강매 사기 피해사례

구직자 A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기업 택배업체
취업이 가능하다는 B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

B업체는 택배차량을 구매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택배차량을 구매할 것을 강요

개조비, 소개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더해 신차보다 비
싼 가격으로 중고 택배차량을 구매한 A씨

뒤늦게 A씨는 B업체가 택배업체와는 전혀 관련 없음을
알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

택배사 취업 시 유의사항

1. 택배대리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택배차량 구매 강요 시 주의

✓ 택배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

2. 구인광고를 등록한 업체가 택배사와 연관된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

✓ 택배사 본사에 연락하거나 택배사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을 요구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으로 연락